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
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
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29324호, 2019.6.5.시행)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일부 개정하고,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위임사항을 반영(안 제28조)

3. 의견제출

○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, 서울 중구청), 문의전화 : 3396-5013, FAX: 3396-8670, 전자우편 : 100jihye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